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마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39호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회에 대한 자격제한 규정이 없으나,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및 지역

위원에 대한 자격제한 사항이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최소한의 자격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않는 사람이 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8102호)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자연스럽게 읽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문장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조례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